휘경 센트레빌 입주자 모집공고

CENTREVILLE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대상 주택이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1순위 청약제한제도가 적용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 14476호(2008. 7. 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65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25층 5개동 297세대 (임대 1개동 51세대 포함) 중 1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자녀 특별공급 3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주차장포함)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별		세대수	세대당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금(10%)	중도금 1차(10%) 2008.11.20	2차(10%) 2009.3.20	3차(10%) 2009.7.20	4차(10%) 2009.12.21	5차(10%) 2010.4.20	6차(10%) 2010.9.20	잔금 입주지정일(30%)
민영주택	22005-01	2008000624(01)	111,35	84,79	26,56	111,35	52,90	164,25	44,83	27	2층		2	231,822	109,178	422,0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126,600
											3층		2		203,978	435,80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130,740
											4층		2		213,078	444,90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133,470
											5층		2		222,278	454,10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136,230
											6층 이상		19		226,878	458,70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137,610
	22005-02	2008000624(02)	111,89	84,89	27,00	111,89	52,96	164,85	45,05	36	2층		4	231,828	190,172	422,0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126,600
											3층		4		203,972	435,80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130,740
											4층		4		213,072	444,90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133,470
											5층		4		222,272	454,10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136,230
											6층 이상		20		226,872	458,70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137,610
	22005-03	2008000624(03)	111,68	84,64	27,04	111,68	52,80	164,48	44,97	18	2층		2	231,839	190,161	422,0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42,200	126,600
											3층		2		203,961	435,80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43,580	130,740
											4층		2		213,061	444,90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44,490	133,470
											5층		2		222,261	454,10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45,410	136,230
											6층 이상		10		226,861	458,70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45,870	137,610
	22005-04	2008000624(04)	145,69	114,99	30,70	145,69	71,74	217,43	58,66	20	104동 1호 라인	2층	1	303,138	248,662	551,80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55,180	165,540
												3층	1		273,462	576,600	57,660	57,660	57,660	57,660	57,660	57,660	57,660	172,980
												4층	1		292,062	595,20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178,560
												5층	1		310,662	613,80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184,140
												6층이상	6		316,862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86,000
											104동 3호 라인	2층	1		217,662	520,800	52,080	52,080	52,080	52,080	52,080	52,080	52,080	156,240
												3층	1		242,462	545,600	54,560	54,560	54,560	54,560	54,560	54,560	54,560	163,680
												4층	1		261,062	564,200	56,420	56,420	56,420	56,420	56,420	56,420	56,420	169,260
												5층	1		279,662	582,800	58,280	58,280	58,280	58,280	58,280	58,280	58,280	174,840
												6층	1		292,062	595,20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59,520	178,560
												7층	1		307,562	610,700	61,070	61,070	61,070	61,070	61,070	61,070	61,070	183,210
												8층이상	4		316,862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86,000
	22005-05	2008000624(05)	146,07	114,88	31,19	146,07	71,67	217,74	58,81	10	2층		1	291,210	238,890	530,100	53,010	53,010	53,010	53,010	53,010	53,010	53,010	159,030
											3층		1		263,690	554,900	55,490	55,490	55,490	55,490	55,490	55,490	55,490	166,470
											4층		1		282,290	573,500	57,350	57,350	57,350	57,350	57,350	57,350	57,350	172,050
											5층		1		297,790	589,000	58,900	58,900	58,900	58,900	58,900	58,900	58,900	176,700
											6층		1		322,590	613,80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61,380	184,140
											7층		1		325,690	616,900	61,690	61,690	61,690	61,690	61,690	61,690	61,690	185,070
											8층 이상		4		328,790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86,000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공히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시 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기입한 청약통장의 재사용은 불가하며, 계약체결 불가에 따른 책임 또한 당사에서 지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견본주택에 전시된 발코니 확장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임.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주택투기지역(2006.11.24.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또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2002.9.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 (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 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가능) 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선택옵션 판매가

(단위 : ㎡, 원 / 부가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확장공사 Type 1 전체확장형 (인방제외)	Type 2 침실	Type 3 침실+주방	Type 4 침실+거실	Type 5 거실+주방	선택옵션 시스템에어컨	침실붙박이장	음식물건조분쇄기
111,35	10,700,000	5,000,000	7,500,000	8,200,000	8,900,000	5,100,000	-	360,000
111,89	10,500,000	5,000,000	7,300,000	8,200,000	8,900,000			
111,68	10,900,000	5,100,000	7,700,000	8,300,000	9,300,000			
145,69	13,400,000	7,600,000	9,900,000	11,100,000	11,100,000	5,800,000	1,110,000	
146,07	13,400,000	8,000,000	10,700,000	10,600,000	10,600,000			

· 발코니 확장은 상기 타입별로만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필수사항이 아님(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임.)
· 침실은 룸이 기본이며 비용추가시 온돌마루 선택 가능.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인방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도 확장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1) 특별공급 일정

· 접수일자 · 시간 : 2008.07.08, 10:00~14:00 · 장소 : 당사 견본 주택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2008.07.08 14:30 / 당사 견본주택

2)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111,35㎡	111,89㎡	111,68㎡	145,69㎡	146,07㎡	합계
서울특별시	1	-	-	1	-	2
경기도	-	1	-	-	-	1
인천광역시	-	-	-	-	-	0
총 계	1	1	-	1	-	3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시 거주지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거주자 40%, 인천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3)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7.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로서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이상을 둔 자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함.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포함이 안됨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입을 입증할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도 거주기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7. 4)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 기타 무주택 입증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가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 1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본인 신청시 사명 가능), 인감 증명서(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1통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주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3자녀 특별공급시 동점자 처리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적용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해 산정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일반공급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7.4)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증액변경 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7.4) 현재이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접수는 당첨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2,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구분	순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천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08. 7.9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모바일청약 아래의 청약신청 접수방법 및 안내참조 · 접수시간 08:30–18:00	· 일시: 2008.7.17 · 장소 : 당사 견본 주택 센트레빌 홈페이지 문화일보에 게재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8.29 이전 국민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 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한 분(전용면적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 청약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이상을 소유[청약자 분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가점제 낙점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7.10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는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로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제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신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이 6개월이 경과 한 분(전용면적85㎡ 초과주택에 한함)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2008. 7.11	· 접수장소: 신한은행 전국영업점 및 인터넷 (www.shinhan.com → 개인고객 → 인터넷청약서비스) · 접수시간 : 인터넷 08:30–18:0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 시간(09:30~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 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2)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은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를 선정함.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관한규칙」 별표 1)에 의한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청약가점 항목의 적용기준 |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되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 청약신청 접수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층별,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 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인터넷 · 모바일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 KB모바일 청약신청 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국민은행(구, 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1, 2순위 : 청약자격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신한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모바일	· SKT : Mbank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단, 3순위: 신한은행 홈페이지(www.shinhan.com)접속 =〉 금융과서비스 → 부동산 → 3순위 주택청약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 방법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 (1, 2 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신한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1, 2 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 (1, 2 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2002.9.5 이후 가입한 분 중 1순위자는 세대주 자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 (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전주택형	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1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 불 기 간	환 불 장 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7.18) 이후 평일 09:30–16:30 ※토/일/공휴일은 제외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환불시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3순위 신청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신한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명의 신한은행계좌에 한함로 이체신청하신 분은 당첨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환급)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호수를 결정하되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 · 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 · 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 · 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 · 호수를 결정함.

■ 인터넷, 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기간	2008. 7. 17 ~ 2008. 7. 26(10 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 1588 – 9999 (서비스번호 :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이용기간	2008. 7. 17~ 2008. 7. 26 (10 일간)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MB Sat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
	이용기간	2008. 7. 17~ 2008. 7. 26 (10 일간)	–

※ 청약 접수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경우 당첨발표일(영업시간 이전)에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 제공(단, 당첨자에 한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 고
정당 당첨자	2008.7.22 ~ 2008.7.24 (3일간)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5–1)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통	· 주택 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 계약용)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도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이혼,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에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2.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3.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4. 2002. 9. 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
5. 1, 2,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이미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이 없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및 단지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주택의공급계약)를 적용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각 항의 1의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1)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을 가점점수에서 차감)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보유특례)
– (현재: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단,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특례에 해당안됨
– (현재: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즉,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입주예정자에 대한 융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융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입주예정월 **2011년 2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예정)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 예정일 **입주전(사용검사일 기준 약 1~2개월 이전)에 입주자가 사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 증 기 간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38,111,920,000	제 01282008-101-0007700 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전쟁,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차명,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 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회 사 명	감리금액(원)	비 고
건축, 토목, 기계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1,074,783,918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 통신, 소방	㈜지여이앤씨	170,000,00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신 한 은 행	· 중도금 전담 수납계좌로 타행송금은 불가하며 신한은행 본/지점에서만 입금가능 (입금시 비고란에 동호수 성명 필히 기재요망)
계좌번호	100-024-226308	
수 취 인	동부건설(주) 외 1	

· 납부방법 : 지정된 분양금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급신청서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시에는 해당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및 단지모형에 표현된 부지주변의 도로 및 교통계획은 인근 재개발정비사업지의 교통영향평가시 승인된 향후 개선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시점의 도로 형태와 다를 수 있음
· 105동은 임대동이며, 공급면적 60.22㎡, 59.75㎡ 총 51세대로 이루어져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 후 공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구조는 전체동이 필로티 또는 주민공동시설로 시공되는 관계로 1층이 없어 보육시설 허가가 불가함(놀이방, 어린이집 등)
· 본 아파트의 남측으로 지상 5층 규모의 공공시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일부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동측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한천로 변으로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후 소음방지계획에 따라 재시공 및 위치변경이 있을 수 있음. 또한 방음벽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측으로 타 재개발정비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에 의해 아파트가 위치할 예정이며 단지 내 아파트의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동의 측벽에 위치할 센트레빌 로고 및 회사 명칭은 관련법규 또는 심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야간 경관 조명은 서울시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독서실, 체육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주민운동시설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당 사업은 주택성능등급제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님.
·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 선택시 변동되는 내용은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사인물을 확인하시고 참조하시기 바람.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휘경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 264171-0006413)
· 시공업체명 : 동부건설(주) (법인번호 : 110111-0005002)

■ 견본주택안내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5-1 문의전화 : 1577-7335
· 사이버 견본주택 : www.centreville.co.kr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